

2019 박문각 주택관리사 합격예상문제
1차 민법 정오표_초판기준_02

〈본책〉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
p.205 문제 11번 지문 ②	② 계약체결시 손해배상액 예정을 한 경우, 그 예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.	② 계약체결시 손해배상액 예정을 한 경우, 그 예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.

〈본책 - 정답 및 해설〉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
p.365 Answer박스 -문제 02번 답	④	①
p.365 Answer박스 -문제 15번 답	④	①
p.365 문제 02번 해설	④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,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'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'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(대판 1998.11.10, 98다42141).	② 민사채권의 법정이율은 연5분이지만, 상사채권의 법정이율은 연6분이다. ③ 금전채무 불이행책임의 경우, 그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의 증명은 요하지 아니한다. ④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. ⑤ 금전채권의 경우에도 특정물채권이 될 수도 있다.